

■ 여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2서식] <신설 2016. 5. 13.>

소속 기관·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

여행자 (신청인)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		
	주소				
확인내용	방문·체류 예정국가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 []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 에 관하여 수행할 임무내용				
	*소속과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				
	여행기간	20 . . . 부터 20 . . . 까지			
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필요성					
담당자 및 연락처	기관명	부서명	담당자		
	주소			전화번호	
	전자우편 주소			팩스번호	

위 신청인은 「여권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가 필요함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 기관·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

직인

유의사항

「여권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「여권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-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·단체 또는 업체 등(이하 "기관등"이라 합니다)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·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: 도급·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
-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·위탁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: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